

선 람	기관의 장



제49호(호외) 2021. 12. 10.(금)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2294호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공고 제2021-2294호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광양시장

1. 조례안명 :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 행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실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하고 우리 시에서도 인권 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인권 기본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인권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추진목표 등

-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에 관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시민인권헌장 제정)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인권헌장 제정·선포(안 제11조)
- (시민인권지기 구성)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인권지기 구성(안 제12조)
- (인권교육 실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 지원(안 제13조)
- (인권증진활동 지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3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전화 : 061-797-223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나. 제출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natio@korea.kr
- 팩 스 : 061-797-2579

붙임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

광양시 조례 제 호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이거나 체류하는 사람 및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추진목표
3.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인권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과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시민인권헌장 제정)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광양시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인권지기 구성) ① 시장은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시민 인권지기(이하 “인권지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지기는 각 읍면동의 인권촉진자로서 생활현장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시책 개선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인권교육 실시)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거나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권증진활동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 시민인권지기,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